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17
----------	------

발의연월일 : 2026년 8월 28일

발 의 자 : 이 정 연 의원

1. 제안이유

- 가. 현행 조례는 관외 분묘에 안치된 부모의 유골을 개장하여 마루공원 봉안당에 모시려는 장기 거주 시민을 봉안당 안치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나. 이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부모 유골 중 관외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를 봉안당 안치대상에 추가하여 장기 거주 시민의 장사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기 거주 시민 부모의 관외 분묘 개장유골을 봉안당 안치대상에 추가(안 제8조제5항제6호)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5.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부모 유골(관외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 한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봉안당의 사용 등) ① ~ ④ (생략)	제8조(봉안당의 사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봉안당 안치대상은 사용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경우로 한다.	⑤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6. <u>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부모 유골(관외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 한함)</u>
6. (생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